

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인문사회치의학교육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 10. 2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인문사회치의학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.

제2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교무부학장, 교육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은 치과대학 내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치의학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 구성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되며, 필요시 교육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학사년도로 한다.

제4조(기능 및 권한) 위원회는 인문사회치의학교육과정의 평가, 조정,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, 심의하여 그 결과가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기반 교육과정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24. 10. 23)로부터 시행한다.

제9편

살
설
위
원
회
규
정